

(앞쪽)

제 호						
비촉명령서						
업체명				대표자		
소재지				전화번호		
품명	규격 또는 구조	단위	수량	비촉 장소	비촉 기간	비고
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자를 비촉할 것을 명합니다.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						

자 르 는 선

제 호		
비촉명령서 수령증		
업체명		대표자
소재지		전화번호
수령인	성명 (서명 또는 인)	대표자와의 관계
	수령일	수령 장소

안 내 사 항

이 명령서를 받은 대표자는 반드시 규격, 수량, 장소, 기간에 따라 물자를 비축해야 합니다.

※ 주의사항

1. 이 수령증은 반드시 반송해야 합니다.
2. 의문사항이나 그 밖의 참고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.

가.

나.

다.